

엘리트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방안 탐색

An exploration for the preven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 in elite sports

임용석(충북대학교, 교수) · 홍덕기*(경상국립대학교, 교수)

Yim, Yong Suk(Chungbu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Hong, Deock Ki(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엘리트스포츠 분야에서 2000년 이후 발생한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 및 엘리트스포츠 정책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기존의 인권보장 대책을 재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방법: 연구방법은 문헌분석(연구 1)과 면담(연구 2)을 진행했다. 첫째, 연구 1은 연구목적과 관련 있는 총 139편의 논문을 최종 선정하여 내용분석을 통해 주요 사건, 문제점 및 대책을 비교 분석했다. 둘째, 연구 2는 스포츠 인권 전문가 10명의 전문가집단 면담(총 3회) 및 개별 면담(총 8명)을 진행했다. 자료는 영역분석과 분류분석을 통해 주제를 도출했다. 자료의 진실성 확보를 위해 다각도 검증, 동료 간 협의 및 전문가 회의를 진행했다.

결과: 첫째, 문헌분석 결과(연구 1), 스포츠인권 침해는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문제로 인식됐다. 정부 및 체육단체는 문제를 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땜질식 처방’으로 기존대책을 반복했다. 학계의 스포츠인권 관련 연구들은 주로 학습권, 폭력, 성폭력, 체육특기자 제도, 인권, 입시비리 등의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면담 결과(연구 2), 스포츠인권 전문가들은 스포츠인권 침해가 구조적 측면에서 관행과 위계에 의해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인식했다. 또한, 은폐구조 속에서 침묵의 카르텔이 작동되고 있었으며 공부와 운동의 병행이 불가능한 단선적 구조 속에서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었다. 엘리트스포츠 분야의 문제점은 공론화의 미흡, 인식의 결핍 및 유명무실한 제도로 나타났다. 엘리트스포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는 체육특기자제도 폐지, 학습권 의미 재정의, 신고시스템 및 징계기준 마련, 운동부 지도자 역할 재정립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는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진단하며 기존 대책을 재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주요어: 엘리트스포츠, 인권침해, 체육특기자제도, 스포츠정책, 운동부지도자

I. 서론

올림픽 금메달로 국위를 선양하고 국민의 자긍심을 높여주던 엘리트스포츠 분야는 폭력을 비롯한 인권침해로 한국 사회의 고질적 문제로 등장했다(안민

* Corresponding author: Hong, Deock Ki (deockkhong@gnu.ac.kr)

석, 홍덕기, 2019). 2000년 대한수영연맹은 한 중학교 수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했다(중앙일보, 2000, 05. 24). 기말고사까지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고 싶다던 선수의 요구는 학업보다 운동이 우선시 되던 당시 체육계 관행¹⁾에 의해 철저히 외면됐다. 이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문제를 대중에게 알린 첫 사건이었다(임용석, 류태호, 2014). 이후 20년간 엘리트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 사건과 대책은 반복됐다. 그동안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과 대책이 제시되었는데도 왜 스포츠 인권침해 문제가 반복되는지에 대한 의문과 문제의식이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다.

학계에서도 엘리트스포츠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졌다(안민석, 2002; 임용석, 최원석, 2020; 조옥상, 이용국, 2013).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는 여전히 많은 수의 선수들이 폭력, 성폭력, 학습권 침해, 비리 등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국가인권위원회, 2008, 2019). 기존의 선행연구와 정부의 대책은 현장의 변화를 이끌지 못했다. 엘리트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 문제들이 반복되는 것은 한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는 엘리트스포츠 시스템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다. 예를 들어, 학교 운동부 관련 제도적 장치의 실효성은 교육법과 시행령 등 상위법령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단위 교육청의 특기자 선발위원회 규정, 학교의 관리 지침, 대학의 입학전형 가이드라인, 대한체육회의 선수등록 규정 등 다양한 장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한승백, 탁민혁, 2017). 하지만, 기존 선행 연구와 정부의 대책들은 엘리트스포츠 사건이 언론 및 대중에 문제시되면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기존 정책을 되풀이하거나, 실현 가능성의 고려 없이 급 조된 측면이 있다. 엘리트스포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표면에 드러난 사건을 처리하는 단기적인 접근과 더불어 체육특기자제도로 대표되는 한국

사회적 기형적 엘리트스포츠 시스템의 변화 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20년간 반복된 엘리트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 문제와 대책을 탐색하고, 기존대책이 왜 실효성을 갖지 못했는지를 밝히며, 현장의 변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문헌분석을 통해 그동안 제시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분석하고, 둘째, 전문가 면담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구체적 방안을 도출했다. 본 연구가 엘리트스포츠 문제의 구조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분석, 전문가 집단 및 개별 면담을 통해 엘리트스포츠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스포츠인권 침해 문제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시도이다. 구체적으로 연구 1에서는 문헌분석을 통해 엘리트스포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주요 사건과 이에 대한 대책 측면에서 탐색했다. 그리고, 연구 2에서는 관련 전문가 집단 및 개별 면담을 통해 연구 1에 따른 진단과 해결방안이 왜 실효성을 갖지 못했는지를 논의하고 현장의 변화를 위한 실질적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1. 자료수집 및 분석(연구 1) : 문헌분석

문헌분석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 한국학술정보(KISS)를 통해 총 4단계에 걸쳐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자료를 수집했다. 연구 1의 자료수집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첫째,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체육특기’검색어를 통해 수집된 학회지 자료는 총 2,272편이었다. 둘째, 이중 ‘KCI 등재’, ‘KCI 우수등재’, ‘SCOPUS’, ‘SCIE’ 등급의 학회지로 범위

1) 수영연맹 관계자는 장희진 선수의 상황에 대해 “시드니 올림픽을 앞두고 특정 선수를 배려하는 것은 대표팀 전체 사기와 직결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중앙일보, 2000년 5월 24일).

를 좁혀 1,239편의 연구를 분류했다. 셋째, 연구 제목과 초록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목적에 적합한 연구물을 분류해서 175편의 연구를 분류했다. 넷째, 각 검색어 간 중복된 자료나 원문검색이 불가능한 연구를 제외한 뒤 총 139편 전문을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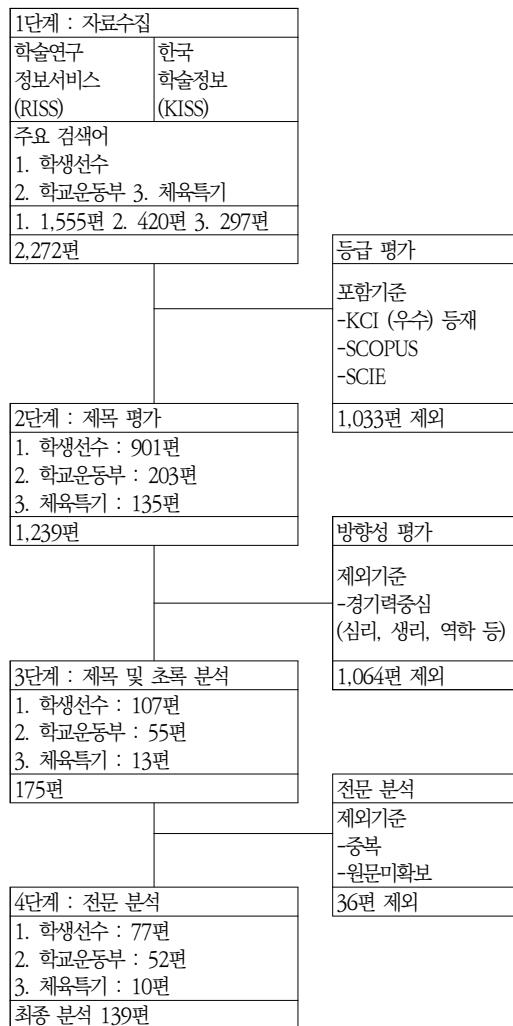
최종 수집된 139편의 분석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 두 명이 각자 연구 전문을 읽고 이를 주제, 문제점, 해결방안의 측면에서 1차 분류과정을 거쳤다. 둘째, 연구자 간 상호토론 및 합의를 통해 2차 분류과정을 거쳤다. 셋째, 분류된 문제점 및 해결방

안이 엘리트 스포츠정책과 현장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토론하고 이를 분석했다. 연구 1은 이를 토대로 주요 사건 및 대책을 중심으로 연구 메트릭스를 구성했다.

2. 자료수집 및 분석(연구 2): 전문가집단 면담 및 개별 면담

연구 2의 자료는 전문가집단 면담 및 개별 면담을 통해 수집했다. 전문가집단 면담은 각 10명 내외로 총 3회 실시했다. 전문가 선정기준은 엘리트스포츠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학계와 스포츠 현장에서 10년 이상 활동해온 체육과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국가대표 지도자, 선수, 체육 교사, 여성학 학자, 인권 전문가, 변호사 등 다양한 사람들을 선정했다. 면담 진행방식은 엘리트스포츠 분야에서 2000년 이후 벌어진 대표적인 사건들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한 학계 및 정부의 정책들에 대한 의견을 집단토론방식으로 진행했다. 전문가집단 면담 시간은 각각 2~3시간 진행했다. 녹취된 모든 집단 면담자료는 10일 내 전사를 원칙으로 했다. 전사된 자료는 연구자 두 명이 각자 여러 차례 정독하며 내용분석 후 상호토론을 거쳤다. 이후 전문가집단 면담 참여자 중 8명(체육과 교수 5명, 여성학 전문가 1명, 국가대표 지도자 겸 선수 1명, 체육교사 1명)을 주요 연구참여자로 선정해 개별 면담을 진행했다.

수집된 전사 자료는 영역분석과 분류분석을 실행했다. 분류된 내용을 대변하는 소제목을 정하고 번호 부여 후 영역을 도출했다. 도출된 영역은 주제별로 분류했다. 이후 연구참여자들에게 자료 공유 및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자료 분석의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또한, 연구자 상호 간 검토, 토론 및 합의를 통해 분류된 내용의 적합성과 정형성을 고려해 내용을 배치-재배치했다.



〈그림 1〉 문헌분석의 기준과 절차

3. 자료의 진실성 확보

자료의 진실성 확보를 위해 본 연구는 연구 절차 간 검증, 연구자 간 검증, 자료 간 검증을 진행했다. 첫째, 연구 1의 최종 분석에 사용된 139편의 연구물은 저자, 발행일, 논문 제목, 연구요약, 제언을 엑셀 파일에 입력했다. 이를 토대로 연구자 간 협의를 통해 8개의 연구주제별 범주를 도출했다. 연구 2의 자료의 진실성 확보를 위해 연구의 자료수집, 분석, 글 쓰기의 과정을 순환적으로 진행했다. 둘째, 수집 및 분석된 자료를 연구참여자에게 공유했고 검토의 과정을 거쳤다. 이후 연구자 간 검증을 통해 자료 분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셋째, 면담자료, 연구자료, 연대기자료의 비교 및 대조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억과 경험의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III. 연구결과

1. 문헌분석 결과(연구 1)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엘리트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와 관련해 기존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회지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했고, 엘리트스포츠 분야의 주요 사건, 해결방안, 정책 및 제언을 비교 분석했다.

1) 엘리트스포츠 관련 주요 사건과 정책

대한민국 엘리트스포츠는 국위선양을 목적으로 국가 주도로 발전해왔다(류태호, 2005). 1972년 체육 특기자제도 도입으로 운동실적만으로 상급학교 진학이 가능해졌다. 이후 1973년 병역특례조치, 1984년 국군 체육부대 창설, 포상금제도 등이 도입되면

서 ‘운동만’ 잘하면 상급학교 진학, 명예, 경제적 부획득과 군 면제까지 가능해졌다(오교문, 임용석, 2018). 2000년부터 현재까지 엘리트스포츠 분야의 주요 사건과 정책은 <표 1>, <표 2>와 같다.

2000년 장희진 선수 사건은 엘리트스포츠 분야의 경기력 및 결과 중심 흐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시드니 올림픽을 앞둔 시점 대한수영연맹은 중학생이었던 그녀의 국가대표선수자격을 박탈했다(안민석, 흥덕기, 2019).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사회적으로 논의된 첫 사건이었다. 2003년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 사건은 축구 꿈나무 8명의 목숨을 앗아갔다(임태성, 박재우, 2011). 레슬링의 김종두 선수는 자전거에 묶인 채 무리한 체중감량을 시도하다 생명을 잃었다(한겨레, 2003. 10. 15). 이 사건을 계

<표 1> 엘리트스포츠 분야 주요 사건(2000~2021년)

번호	년도	범주	주요 사건
1	2000	학습권	장희진 수영선수 국가대표 박탈
		인권침해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
2	2003	폭력	고등학생 레슬러 김종두 선수 죽음
3	2004	폭력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구타 사건
4	2005	폭력	LG화재 김영철 감독의 선수 폭행
5	2006	실태조사	인권위 초등 학생선수 인권 실태조사 성추행 우린은행 박명수 감독 선수 성추행
6	2007	학습권	KBS 시사기획 쌈 '죄송합니다 운동부입니다.' 방영
		성폭력	KBS 시사기획 쌈 '스포츠와 성폭력 에 대한 인권보고서' 방영
7	2008	학습권	체육과학연구원 학생선수 최저학력 제 도입 타당성 연구
		실태조사	인권위 중·고등학교 학생선수 인권 상황 실태조사
8	2009	실태조사	인권위 중도탈락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폭력	배구 국가대표팀 코치 선수 폭행
9	2010	실태조사	인권위 대학운동선수 인권실태조사
10	2016	입학비리	정유라 대학 부정 입학 및 학사관리
11	2017	미투	테니스 김은희, 유도 신유용, 리듬체조 이경희 코치 성폭력 사건 등
12	2018	성폭력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성폭행
13	2019	인권침해	민관합동 스포츠혁신위원회 발족
		실태조사	인권위 운동선수 인권상황 전수조사
14	2021	폭력	배구선수 이재영·이다영 자매 '학폭'

엘리트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방안 탐색

<표 2> 엘리트스포츠 분야 주요 정책(2000~2021년)

번호	년도	주요 정책
1	2000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체육진흥법 제정(1962년) · 체육특기자제도 도입(1972년) · 병역특례법 제정(1973년)
2	2000	체육특기자 대학 동일계 진학 조치(전과 금지)
3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학생선수 폭력근절, 학교운동부 정상화 대책
4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학교체육 주요 정책
5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체육정상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 국회 통과 · 인권위 학생선수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6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성폭력 근절대책(문체부, 교과부, 대한체육회)
7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엘리트 체육운영 개선방안(국무총리실) · 인권위 스포츠인권정책포럼 발족 ·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교과부, 문체부) · 최저학력제 시범 운영
8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운동부 비리 방지 대책 발표(교과부) · 인권위 스포츠인권 현장 및 가이드라인 권고 ·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 창립 · 최저학력제 단계적 전면 시행
9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위 스포츠 인권 현장, 가이드라인 제정(6월) · 학교체육진흥법 제정
10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체육활성화 추진 계획(교육부) · '학생선수 e-school' 구축 방안 발표(교육부)
11	2014	인권위 스포츠인권 강사 양성과정 실시
12	2015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통합
13	2017	'학생선수 e-school' 전면학대 시행(교육부)
14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설립 · 혁신위 설립 및 7개 권고안 발표 · 인권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설립 · 대한체육회 가혹 행위 및 (성)폭력 근절 실행대책 · 교육부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 · 혁신위 권고안 이행 점검 · 인권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권고
15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체부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 교육부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
16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故 최숙현 법(국민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 · 문체부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 교육부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
17	2021	교육부, 문체부 스포츠 분야 학폭관련 대응 정책

기로 2000년 학습권에 대한 논의는 학생선수의 처우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이어졌다. 2005년 교과부는 '학생선수 폭력근절 및 학교운동부 정상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장은 변하지 않았다. 2005년 LG화재 남자배구팀 김영철 감독의 선수 폭행, 2007년 우리

은행 여자농구팀 박명수 감독의 선수 성추행이 발생했다.

2007년 학원체육 정상화를 위한 국회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학생선수의 학업과 운동 병행을 위한 주말·방학대회 개최, ② 최저학력제 도입, ③ 합숙소 폐지, ④ 소년 체전 변경, ⑤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등이 발표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초등학교(2006년)', '중·고등학교(2008년)', '대학교(2010년)', '중도탈락 학생선수(2009년)' 등 총 4차례의 학생선수 인권상황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초·중·고·대학교 학생선수의 학습권 침해, 폭력, 성폭력 등 인권실태는 심각한 수준이었으며(국가인권위원회, 2008, 2009, 2010), 중도탈락 학생선수는 운동부 시절 운동 중심 일상을 살아온 결과 대인관계의 어려움, 학생으로 복귀의 어려움, 심리적 불안감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가인권위원회, 2009). 국가인권위원회는 실태조사 이후 2007년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를 했고, 2010년 '스포츠 인권 현장' 및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정·발표했다. KBS의 시사기획 '쌈'은 2007년 학생선수의 학업과 운동 병행에 관련된 '죄송합니다. 운동부입니다.'와 2008년 '스포츠와 성폭력에 대한 인권보고서'를 방영했다. 이는 엘리트스포츠의 화려한 성과에 가려져 있던 학습권, 폭력, 성폭력, 인권침해 등 문제를 사회적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원체육 정상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대한체육회는 2008년 '스포츠 성폭력 근절대책 수립 및 대책안'을 발표했다. 같은 해 한국체육과학연구원(현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은 '학생선수의 학업 정상화를 위한 최저학력제 도입 타당성'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를 기반으로 2010년 단계적으로 도입되던 학생선수의 '최저학력제'가 2011년 전면 도입됐다.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

운동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선진형 학교운동부 시스템 구축계획안’을 발표했다. 다양한 기관에서 실태 조사, 연구, 제도가 발표되고 도입되던 기간에도 엘리트스포츠 폭력 문제는 지속됐다. 2009년 배구 국가대표팀 이상열 코치의 박철우 선수 폭행 사건이 대표적이다. 또한, 2013년 학교체육 정상화를 위한 ‘학교체육진흥법’이 제정되었다. 구체적으로, 2조 ‘학교운동부와 구성원 정의’, 6조 ‘학생선수의 인권보장을 위한 학교장의 역할 명시’, 11조 ‘학교운동부의 전반적인 운영’, 12조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자격 기준, 지원, 제제 사항’이 포함됐다(임용석, 류태호, 2014).

2016년에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통합됐다.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되며 다양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하던 시기 체육계는 큰 파문에 휩싸였다. 정유라의 대학 ‘부정입학’과 ‘특별학사관리’가 이유였다. 그녀의 대학입학 과정과 학교생활은 ‘국정농단’, ‘비리’란 단어와 함께 대한민국을 가로지르는 핵심어가 됐다. ‘담당 교수의 학점관리’, ‘학점변경’, ‘결석 미인정’ 등 그녀가 누린 별도의 학사관리 혜택은 다른 학생선수에겐 해당 사항이 아니었다. 이를 관리 및 감독해야 할 교육부는 뒤늦게 학생선수의 학업 실태를 전방위적으로 조사했다. 그녀의 모친은 체육계의 허술함을 이용했다.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평창 동계올림픽’ 등 체육 분야의 비리를 통해 그녀가 정치·사회·경제적으로 미친 영향력을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다.

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유치한 동계올림픽이 2018년 평창에서 개최됐다.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올림픽임에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폭력과 성폭력 문제는 여전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력 사건은 2019년 한 빙상 국가대표선수가 고소장을 제출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미성년자 시절부터 수년간 폭력 및 성폭력을 지속해서 당해왔다는 내용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SBS, 2019. 1. 10.). 스포츠 강국을 자부하는 대한민국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조차도 폭력과 성폭력에 희생된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19년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출범해 총 7개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전체적인 내용은 대한민국 스포츠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소통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엘리트스포츠 중심의 성적 지상주의를 탈피하는 것으로 ‘모두를 위한 스포츠’를 실현하는 스포츠 패러다임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했다(임용석, 최원석, 2020). 이 중 2차 권고안(학교체육정상화)은 큰 논쟁거리가 되었다. ‘학교 스포츠 정상화’를 목적으로 구성된 2차 권고안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포함한 6가지 세부 내용(학기 중 주중대회 금지, 최저학력 준수, 학교단위 교육 및 훈련계획 수립, 경력전환 학생선수 지원 프로그램, 국가대표 학생선수 공부지원 등)을 기술하고 있다(홍덕기, 2020). 같은 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설립하고 운동선수들의 인권상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 엘리트스포츠의 폭력·성폭력 실태는 15.7%의 학생선수가 언어폭력, 14.7%가 신체 폭력, 3.8%가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²⁾

스포츠혁신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실태조사 및 대책을 마련하는 동안 트라이에슬론 유망주 최숙현 선수는 가혹 행위를 알리기 위해 목숨을 던져야 했다. 그녀는 지도자, 무면허 팀 닥터, 일부 팀 선배에게 지속적인 폭행, 폭언 및 갑질을 당했다. 그녀는 대한체육회, 대한철인3종경기협회, 경북체육회, 경주경찰서, 경주시청 등에 자신의 선수 생명을 걸고 도움 요청을 했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오마이뉴스, 2020. 9. 21.). 2020년 8월 故 ‘최숙현법’으로 불리는 ‘국민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가 8월 5일 출범했다. 하지만, 이숙진 초대 이사장은 전문인력 부족과 정상적 업무 유지의 한계를 이유로 7

2) 국가인권위원회의 2006년 조사 결과, 조사대상 중 고등학교 학생선수의 78.8%가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고, 63.8%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조사 결과, 조사대상 대학교 학생선수의 89.7%가 폭력피해 경험 이, 16.2%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엘리트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방안 탐색

<표 3> 엘리트스포츠 분야 주요 연구물 범주 및 대안

범주	주요 연구주제	대안
학습권 (70개)	- 학습권 보장	· 학생선수 학사관리 · 학습권 보장
	- 학습권 보장 사례	· 최저학력제 도입·개선 · 운동시간·시합참여 제한
	- 학업 실태조사	· 기초학력반 운영 · 학업지원(튜터링, 종목별 프로그램 개발 등)
		· 학습권 보장 · 학습기준 확립 · 선수·지도자 교육 · 지도자 자격 강화 ·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폭력·성폭력 (27개)	- 신체폭력, 언어폭력	· 체벌기준 확립 · 선수 인권보장 · 폭력 예방 제도 도입 · 운동부 구조개선 · 성 정체성 확립 프로그램 개발
	- 성폭력, 성희롱	
	- 체벌	
	- 성 역할	
제도(정책) (23개)	- 학교체육진흥법	· 운동실적 중심 평가 개선 · 운동부 정상화를 위한 법(법령, 규칙, 조례 등) 제정
	-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 최저학력제 실효성 검증 · 입학제도 개선
	- 스포츠 안전권	
	- 체육특기생 제도	
인권 (16개)	- 인권보장	· 인권보장 · 인권보장 환경 구성
	- 인성	
	- 여성 선수 인권보호	
입시 (3개)	- 입시비리	· 입학제도개선(학력 포함, 학사 관리와 연계)
	- 상급학교 진학	· 동일계 전학조치, 병역특례제도, 체육특기자제도 개선
기타(운영 실태, 시스템, 문화 등)(24개)	- 합숙훈련	
	- 중도탈락, 은퇴선수	· 클럽 시스템 도입(전환) · 학교운동부 폐지
	- 학생선수 육성	· 대입제도 개선 · 체육전문학교 육성

개월 만에 자진사퇴했다(동아일보, 2021, 3, 19).

2021년 초, 쌍둥이 배구선수의 ‘학폭’ 논란이 체육계를 강타했다(유재구, 2021). 전·현직 선수들이 대상으로 지목됐고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합동으로 ‘스포츠 분야 학폭관련 대응 정책’을 발표했다. 체육특기자제도가 시행된 지 50여 년을 지나며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됐지만, 역설적으로 운동만 해야 해서 문제를 낳게 됐다(오교문, 임용석, 2018). 운동만 해야 하는 ‘(학생)선수’. 그들에게 발생하는 폭력, 성폭력, 인권 침해 문제를 방지하고자 다양한 대책이 발표·도입되고 있지만,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2) 엘리트스포츠 관련 연구

대한민국 엘리트스포츠는 학교운동부를 기반으로 성장했다. 국가 주도로 소수의 학생선수를 육성하는 구조(류태호, 2005)는 단기간에 적은 투자로 효과를 가시화하는 엘리트스포츠는 정책관계자들에게 매력적인 대상이었다(이상연, 안민석, 2004).

본 연구에서 139편의 관련 연구물을 분석한 결과 <표 3>과 같이 총 163개의 범주가 도출³⁾됐다. 학습권 범주 70개, ‘폭력·성폭력’ 범주 27개, ‘제도(정책)’ 범주 23개, ‘인권’ 범주 16개, ‘입시’ 범주 3개, ‘기타’ 범주(운동부 운영실태 및 시스템, 문화 등)는 24개였

3) 두 가지 이상의 범주에 해당하는 연구는 중복으로 처리했다. 예를 들어, 이성은, 이명선, 변혜정, 김상범(2009)의 연구는 학습권, 폭력, 성폭력 요인을 다루므로 학습권, 폭력, 성폭력 범주에 모두 포함했다.

다. 이 중 학생선수의 ‘학습’과 관련된 연구가 4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학습권 관련 주요 연구 주제는 학습권 보장 및 사례, 실태조사 방법이 주로 다뤄졌다. 다음으로 폭력·성폭력 범주가 16.5%, 제도(정책) 범주가 14.1%, 인권 범주 9.8%, 입시 범주 3% 순으로 나타났다.

폭력·성폭력 관련 연구는 폭력(언어폭력), 성폭력(성희롱), 성 역할에 대한 주제로 연구가 진행됐다. 제도(정책) 범주에서는 엘리트스포츠와 직접 연관된 체육특기자제도와 학교체육진흥법이 주로 다뤄졌다. 인권 범주에서는 인권보장과 여성 선수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됐다. 상급학교 진학과 관련된 연구는 입시비리로 비롯된 현장 개선과 관련된 연구였다. 가장 많은 범주를 형성한 ‘학습권’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제시한 대안에도 포함되었다. 이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담론이 지배적으로 형성되어왔음을 보여준다(명왕성, 2020). 학습권 보장은 엘리트 체육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엘리트스포츠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은 <표 4>와 같다. 구체적으로, 학습권 보장이 84개(전체 4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중 59개의 빈도를 나타낸 학습권 보장 관련 대안은 최저학력제도의 도입, 학습권 보장을 통한 학생선수 역량 강화, 수업 참여를 통한 다양한 관계 형성, 학과 선택의 자유 보장 등의 내용이었다. 이어서 ‘학력 저하 방지’, ‘학업 관리체계 및 학습환경 구축’ 등 학습지원 및 관리 등의 관련 대안도 25개로 나타났다.

2순위는 21.2%로 나타난 ‘체육계 구조개혁’과 관련

<표 4> 엘리트스포츠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순위	구분	빈도	%
1	학습권 보장	84	42.42
2	구조개혁	42	21.21
3	인권보장	37	18.68
4	진학제도 변경	20	10.10
5	시합(훈련) 참여 제한	8	4.04
6	etc.	7	3.53
	계	198	100

된 대안이다. 상명하복, 위계 문화, 인권침해 등의 엘리트스포츠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37개의 대안과 개혁을 위한 법·제도 제정 및 도입 대안(5개)이 제안되었다. 또한, 경기력과 성과 중심으로만 설명되는 엘리트스포츠의 현재 시스템의 변화를 제언했다.

3순위 대안은 18.6%의 ‘인권보장’이다. 인간으로서 기본 권리, 학생으로서 학습권, 선수로서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도자 및 학생선수 교육을 제언했다. 4순위는 10.1%의 ‘진학제도변경’이다. 경기력으로만 상급학교 진학이 가능한 현 체제를 비판하고, 입학 비리 근절을 위해 학업성적을 포함하는 선진 진학시스템 구축을 제언했다. 현 체육특기생 대학입학제도를 개혁하거나 폐지하는 제안도 있었다.

5순위인 ‘시합 및 훈련 참여 제한’은 4.0%로 나타났다. 학기 중 주중 시합을 제한하고, 주말 및 방학 경기를 개최해 학습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운동시간 제한, 리그제로 변경해 학습권을 보장하자는 대안도 존재했다. 기타 대안으로는 지도자의 직업 안정성 보장(2개), 운동부 폐지(1개), 재정확보(1개), 체육전문학교 육성(1개), 체육전문 육성기관(1개) 등이 있었다.

2. 면담 결과(연구 2)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면담을 통해 엘리트스포츠의 문제를 진단하고 및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1) 엘리트스포츠의 인권침해 구조

전문가 면담 결과, 엘리트스포츠의 인권침해 구조는 ‘발생구조: 관행과 위계’, ‘은폐구조: 침묵의 카르텔’, ‘단선구조: 학습권 침해’로 나타났다.

(1) 발생구조 : 관행과 위계

국가 주도로 성장해온 대한민국 엘리트스포츠는 소수의 운동선수를 압축적으로 성장했다(류태호,

2005). 이런 구조 속에서 엘리트스포츠 현장의 부조리한 관행과 수직적 위계가 공고해졌다.

〈전통이란 명목의 폭력적 위계 문화〉

폭력적 집단주의 문화가 감독, 코치, 선배 순으로 공고히 자리를 잡고 있어요. 예를 들어, 기숙사 생활 같은 경우 여전히 선배가 후배에게 빨래를 시키는 거죠. 이건 길들여진 문화 아닌가 생각해요. 예전과 비교해 폭력의 빈도나 강도는 약해졌지만, 폭력의 본질적인 측면은 달라지지 않은 거죠.

(개별 면담, 이수영 교사)

학교운동부의 위계질서는 중요하다. 수직적 위계질서는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예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래서 지도자와 선수, 선배와 후배의 관계는 수직적이고 위계적이다. 특히 지도자의 말은 ‘어길 수 없는 법’과 같다(임용석, 류태호, 2014).

〈폭력과 훈련 사이: 폭력 발생구조〉

학교에서 유도코치가 아이를 가르친다는 취지로 조르기를 해서 기절시킨 일이 있었어요. 유도 가르치는 분들은 훈련 중 기절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는데 아이에게는 공포였던 거죠. 이런 일이 훈련을 명분으로 한 폭력이 되는 거거든요. 이 외에 집합시켜놓고 ‘파이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머리박기를 시키는 등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개별 면담, 이수영 교사)

〈폭력: 강해지기 위해 견뎌야 하는 것〉

스포츠를 과도하게 수련의 영역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온갖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견뎌내야 큰 사람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문화가 한국 정서에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스포츠는 혼히 ‘남금질’한다고 하잖아요? 많이 때려야 쇠가 단단해지는 것처럼. ‘신체적인 고통을. 특히, 폭력마저도 잘 견디고 그걸 넘어서야 훌륭한 선수가 된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개별 면담, 주현주 위원)

일상생활에 필요한 힘과 관절 가동범위를 넘어서는 기능 수준을 요구하는 엘리트스포츠에서 신체적 탁월성을 중요한 요인이다. 대부분의 엘리트 선수는 신체적 탁월성을 체득하기 위해 오랜 시간 훈련을 반복한다(홍지은, 최재섭, 임용석, 2021). 문제는 신

체적 탁월성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상황이다. 훈련 시 인권침해상황이 발생해도 선수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 훈련과 폭력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유재구, 2021).

〈여성 선수의 고통〉

술자리에서 지도자 선생님이 자기를 옆에 앉힌다든지 아니면, 술 먹고 자기가 자고 있는데 베란다 난간을 타고 들어와서 (성폭행)하려고 했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여성 선수들 사이에서는 되게 일상적으로 하는 이야기거든요. 여성 선수들끼리는 그 (남성)지도자가 “너한테도 그랬어?”, “나한테도 그랬어.”라고 다 이야기하죠. 여성 선수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그런 (성폭력)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개별 면담, 김동계 선수)

〈감독님 방에 혼자 가지 마라〉

(예전 운동할 때) 선배들에게 “감독님 방에 저녁 시간 이후에 혼자 가지 마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중략)... 주장이 감독님 방을 청소하고 그 외 거의 모든 것을 쟁기는 역할을 했죠. 지금 돌이켜보면 굉장히 문제로 보이는 상황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그 일종의 권력이 주장에게 많이 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러니까 주장이 선수들을 통제하고 감독님 안 계실 때 코치 역할을 하기도 했죠.

(개별 면담, 주현주 위원)

성폭력은 훈련 이외의 맥락에서도 발생한다. 선수 관리, 통제, 혹은 생활지도의 이유로 성폭력이 사용되기도 한다.

〈통제를 위한 성(폭력)〉

성폭력은 좀 약간 다른 차원인 거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거를 통제의 한 형태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인식이 되게 많더라고요. 지도자들 사이에 직접적으로 그런 말을 한 인터뷰도 있었잖아요. 시사기획 쌤에서. “여자선수를 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으로 통제하는 거다.”

(개별 면담, 주현주 위원)

〈통제적 관계: 지도자와 선수〉

오랜 시간 동안 가정에서 떨어져서 고립되어 합숙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 지도자가 여자 선수의 이성 문제를 통제해요. 남자 지도자들이 여자들은 남자한테 빠지면 훈련이나 공부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성별 고정관념을 가지고 선수의 관계를 제한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악용하는 거죠.
(개별 면담, 주현주 위원)

운동부 내에서 성폭력과 관련된 사실을 공론화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는 김동계 선수의 말을 빌리자면 “말해도 바뀌지 않을 것이란 인식과 나에게 피해가 돌아올 거란 사실” 때문이다.

〈성폭력과 폭력: 내가 한번 참지〉
(성폭력) 상황을 코치 감독들한테 이야기했더니. 다음 날 자기만 더 운동을 시키고 왜 선배 말을 그렇게 안 듣냐는 등 감독, 코치랑도 짜고 아예 ‘따’를 시켜서 시즌 내내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밖으로 말을 꺼내지 못하는 게 이걸 문제제기하면 자기가 오히려 더 피해를 볼 거 아니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죠. 故 최숙현 선수 같은 경우의 사례를 보면 아무도 들어주지를 않았잖아요.

(개별 면담, 김동계 선수)

〈성폭력의 발생구조: 운동부의 폐쇄성〉
이런 상황이 발생하려면 굉장히 폐쇄적이어야 하잖아요. 집단주의 문화, 낮은 성인지감수성, 폐쇄성 등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성폭력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거죠. (개별 면담, 이수영 교사)

인권침해의 발생 맥락에는 부조리한 관행과 스포츠 분야 특유의 위계적 문화가 낮은 성인지감수성 등과 맞물려 고착화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은폐구조 : 침묵의 카르텔

〈관계〉
일반학생의 학폭 사건과 달리 학교운동부의 경우 지도자, 운동부 담당 체육교사, 학부모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얹혀서 문제가 커지지 않게 웬만하면 덮으려고 노력을 해요. (1차 집단 면담, 임정의 교사)

〈진학 수단〉
사실 비인기 단체종목의 경우 팀 성적 때문에 팀원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죠. 예를 들면 매해 성적에 따라서 특기자 자격 및 진학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출전권을 위해 감독에게 눈도장 받으려는 상황도 생기고 선배들이 후배를 압박하기도 하죠. 후배가 잘해서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둔다 해도 선배의 입장은 본인들의 플레이가 눈에 띄어야 진학에 유리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배가 선배들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1차 집단 면담, 주현주 위원)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 문제가 ‘웬만하면’ 알려지지 않는 이유는 운동부의 3주체인 관리자(학교, 교육청), 수요자(학생선수, 학부모), 공급자(운동부 지도자)의 ‘침묵의 카르텔’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학교와 교육청은 명예를 위해, 학생선수와 학부모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지도자는 자신의 생계유지를 위해 반인권적 운동부의 위계, 차별, 폭력문화를 방관, 묵인 및 동조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09).

〈학습된 무기력과 2차 피해〉

학습된 것도 있지만 실제로 진짜 선수들이 문제를 제기해도 바뀌지 않잖아요? 일단 선수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 자체를 되게 두려워하고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는 문화 자체가 아니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목소리를 내도) 자기한테 돌아오는 피해가 있으니까 못하게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번은 전천선수촌 가서 인권센터를 선수들한테 홍보할 기회가 있었는데 선수들이 했던 말이 “거기 가면 찔려요.”였어요.

(개별 면담, 김동계 선수)

‘학습된 무기력’과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운동부 내부의 인권침해 상황을 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간〉

선수들이 한 공간에서 너무 오랫동안 같이 지내면서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발생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선수 수급을 학교지역 학생들 가지고는 절대 못 채우니까 멀리서도 오고, 당연히 별도의 숙박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개별 면담, 임정의 교사)

운동 이외에 선수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합숙소는 폭력에 취약한 공간이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학교 학생선수의 96%가 합숙 경험이 있다. 중요한 것은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 장소가 합숙소(62%)란 것이다. 이는 11년 전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⁴⁾와도 같다.

〈계약해지〉

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제보했던 친구들이 계약을 해지당했다가 복직한 사례가 있어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에 해당하지 않는 비정규직 계약직의 경우 지도자의 눈 밖에 나면 계약 기간이 지나고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선수를 길들이는 거죠.
(2차 집단 면담, 이듬직 교수)

운동부의 비리를 밝히기 위해 중언한 공익제보자는 견고한 엘리트스포츠의 은폐 구조 속에서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 불분명한 사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보복성 고소로 제보자들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한 대책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실효성 없는 ‘스포츠 학폭’ 대책〉

이번 배구 쟁등이 학폭 사건의 대책으로 ‘가해자 국가대표 출전 금지’가 나왔는데 이는 기존의 학폭 대책과 맞지 않아요. 현재 학교폭력은 9단계인데 이 중 9단계인 퇴학처분은 삭제가 안 되지만, 다른 단계는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기록삭제가 가능합니다.

(1차 집단 면담, 김대안 변호사)

(3) 단선구조 : 학습권 침해

학생선수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단선적 구조’는 여러 문제를 낳았다(임용석, 류태호, 이규일, 2010). ‘단선적 구조’ 속에 ‘체육인’으로 길러진 학생선수가 인권침해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유재구, 2021). 학생선수의 학습권은 지식 습득 이상의 의미가 있다(임용석, 류태호, 2014). 이는 운동부 이외의 타자들과 상호작용할 기회이자, 삶에 필요한 다양한 기준을 정립할 장이다. 하지만 운동만 선택해야 하는 대한민국 운동부 맥락에서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기란 쉽지 않다.

〈제2의 장희진〉

국가대표는 외국어 고등학교 입학할 때 처음 선발되었죠. 그 당시 국가대표 첫 소집훈련과 학교 시험 기간이 겹쳤었어요. 근데 하루라도 소집훈련에 빠지면 국가대표 포기각서를 쓰고 나가라고 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에 감독이 바뀌고 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시 국가대표가 됐고 이후 12년간 국가대표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개별 면담, 김동계 선수)

2000년 체육특기생 ‘동일계 진학’ 정책 발표 이후 체육특기생들은 체육 관련 학과로만 진학이 가능해졌다. 이는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초의 정책이었지만, 학생선수의 ‘학업 및 진로 선택권’의 원천 봉쇄란 결과를 불러왔다(국가인권위원회, 2010).

〈체육계열 동일계 진학 문제〉

한국에서 대학 다녔던 학생선수 친구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선수들이 체육 전공수업 이외에 다른 수업을 들으려고 하면 (운동) 특기생이 왜 이 수업을 듣냐고 대놓고 나가라고 한 경우도 많았데요. 그게 운동선수를 바라보는 시각이었던 거죠. 대학은 학문을 공부하는 곳이고 흔히 말하는 융합 전공이 사회적으로 유행인데 체육학과만을 전공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개별 면담, 김동계 선수)

엘리트체육과 관련된 문제의 ‘발생’ 및 ‘은폐’ 구조는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기 어려운 단선 구조(임용석, 류태호, 이규일, 2010)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운동만 강요하는 ‘단선구조’는 상대적으로 학생선수의 학습권 침해란 결과로 이어졌고, 운동 ‘만’해야 하는 운동부 문화를 형성했다. 운동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침묵’, ‘2차 피해’, ‘불이익’과 같은 은폐 구조는 더욱 견고해졌다. 이는 인권보장을 중시하는 사회·문화적 변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구조라 판단된다.

2) 엘리트스포츠의 문제점 진단

전문가 면담 결과, 엘리트스포츠의 문제점 진단은 ‘공론화의 미흡’, ‘인식의 결핍’, ‘유명무실한 제도’로 나타났다.

4)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대학생 학생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83.9%의 학생선수가 기숙사나 합숙소에서 단체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숙소나 훈련장소와 같은 공간에서 89.7%의 학생선수가 폭력을 경험했다. 폭력 범도는 기합(74.5%), 체벌 등의 공포감(67.7%), 언어폭력(67.0%) 등의 순이었다.

(1) 공론화의 미흡

엘리트스포츠 분야의 문제점 중 하나는 메달 지상주의에 매몰되어 인권침해에 대한 공론화가 미흡했다는 점이다.

〈메달 지상주의〉

올림픽 메달 따는 게 대한체육회의 역할이었죠. 국력이 약했던 시절 올림픽 메달을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 알리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따라서 수십 년 동안 추진한 엘리트스포츠 육성정책으로 인해 그동안 발생했던 문제점들은 부차적인 일이 되었을 거고.

(개별 면담, 이듬직 교수)

2021년 일명 ‘스포츠 학폭’으로 불리는 쌍둥이 배구선수 폭력 사건은 스포츠 분야의 폭력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의 촉매제가 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며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유재구, 2021).

〈스포츠 학폭의 개념〉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니 학폭이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학폭으로만 한정하면 구조적이고 폐쇄적인 스포츠 폭력에 대한 것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일반 학폭에서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폭력 범위는 그 비율이 1% 미만이에요. 그런데 운동부 폭력은 30%까지 가잖아요. 또한, 스포츠 분야의 폭력은 초, 중, 고등학교에서 나타난 폭력과 대학, 실업, 프로에서 나타난 폭력이 맥을 같이 하고 있어서 구조적 특수성이 있다고 봐요. 그 특수성은 메달을 따야지만 진학할 수 있고, 지도자는 재계약을 위해 성적을 내야만 하고, 부모들은 자식에게 미래를 준비한다고 생각하니까 모두가 (폭력) 구조를 묵인하게 되죠.

(개별 면담, 이듬직 교수)

학교에서 학생 간 발생하는 폭력을 의미하는 기존 ‘학교폭력’의 개념이 스포츠 분야의 학교폭력을 규정하기에는 스포츠 분야만이 가진 특수성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언론보도의 문제점〉

스포츠 분야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대

안들에 대한 그 어떤 논의도 없이 국민의 이목을 끌 만한 것 중심으로 보도가 되는 언론 형태는 문제가 있죠. ‘나도 옛날에 당했는데’ 하면서 마녀사냥이 벌어지는데 냉정하게 보면 이 사안의 기저에 무엇이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단순한 여론몰이로 누군가를 추락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한 행동을 한 구조적 원인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거죠.

(1차 집단 면담, 이수영 교사)

언론에서 일부 스타 선수의 대중성에 편승해 표면적인 문제에만 머무르며 구조적인 스포츠 분야 폭력에 대한 본질적 이해와 대안 제시 측면의 공론화는 부족했다.

(2) 인식의 결핍

‘공론화의 부족’과 함께 스포츠 인권침해에 대한 체육단체나 정부의 의지 부족도 문제다.

〈의지 없는 개혁〉

사실 스포츠 폭력 문제는 협역 선수의 경우 문제 제기하기 어렵거든요. 특히, 문제부가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누가 스포츠윤리센터에 믿고 신고할 수 있겠나요.

(1차 집단 면담, 민혜수)

〈대책의 재탕: 사라진 레퍼런스〉

스포츠 학폭의 대책이라고 문체부에서 보도한 내용이 이미 혁신위 권고에서 다 얘기했던 사안이에요. 작년까지도 (혁신위) 권고 이행을 제대로 안 하다가 이번에 사건이 터지니 교묘하게 혁신위 이름(레퍼런스)을 지워버리고 대책이라고 발표한 거죠. 문체부가 아직도 여론이 안 좋을 때만 재탕 수준의 대책으로 면피하려 한다는 답답함이 있어요.

(3차 집단 면담, 주현주 위원)

〈스포츠윤리센터: 예견된 파행〉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이 잘하고 있는데 밑에서 직원들이 움직이질 않는다니까. 처음 세팅을 잘못한 거야. 스포츠인권 전담 기구 설립은 혁신위 1차 권고안이고 독립성, 신뢰성, 전문성을 주문했는데 설립추진단부터 그렇게 꾸려지지 못했어.

(개별 면담, 김백호 교수)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일부 엘리트스포츠 관계자의 반대는 또 다른 벽으로 작용했다.

엘리트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방안 탐색

〈대한체육회의 반대〉

문체부에서는 대한체육회와 관련한 혁신위 권고들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 일단 가장 핵심적인 KOC 분리 같은 경우는 대한체육회에서 계속 반대하는 상황이고, 수업일수와 관련해서 대회개최 횟수를 줄이라는 부분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

(개별 면담, 김백호 교수)

〈학교운동부 운영규정의 불이행〉

학교체육진흥회에서 학교운동부 운영규정 연구를 태권도, 축구, 농구, 빙상 종목에서 수천만 원 들여서 시범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운영지침은 NFHS 기준을 따랐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하나도 이행이 안 되는데 뭐하러 만들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논의과정에서 대한체육회, 문체부, 교육부 관계자들이 처음에 좀 오다가 나중에는 견해차가 커지니 아예 오지를 않더라고요.

(1차 집단 면담, 이수영 교사)

〈소수가 다수를 대변하는 구조〉

반대하는 사람들은 되게 소수지만 조직적으로 여론 대응을 해서 전체의 목소리인 것처럼 과잉 대표되죠. 수십 년 동안이나 폭력이나 성폭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도 소수 엘리트스포츠 사람들의 '제 식구 감싸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개별 면담, 주현주 위원)

〈제 식구 감싸기〉

연맹의 구성원들이 스포츠인권 침해에 대해 비슷한 인식 수준을 하고 있어서 문제를 덮으려고 한다는 거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고, 결론이 뻔히 예상되고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연맹, 가맹 경기단체, 체육회끼리는 같은 편이니까 문제해결이 어려운 거죠.

(개별 면담, 이수영 교사)

한편, 국가의 체육 정책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위치에 어떤 인사가 임명되는지도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 정책의 실효성에 영향을 미쳤다.

〈체육계 인사의 중요성〉

정치권의 체육단체장 인사과정을 보면 이름있는 매달리스트 출신 스타들을 자리에 앉혀서 표를 확실하게 챙기는 수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지. 스포츠 인권에 대해 어떤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임명되는지가 정책실행에 굉장히 중요하거든.

(개별 면담, 조열정 교수)

엘리트스포츠는 일부 인기 종목을 제외하고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선수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군다나 불미스러운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할 의지도 없는 상황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고사 직전의 엘리트스포츠〉

일부 인기 종목을 제외하고는 선수 선발팀 꾸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현장이 어려워. 특기자제도가 일종의 독소로 작용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지. 그런데도 애써 모른척하는 현장이 답답하고 슬픈 거지.

(개별 면담, 조열정 교수)

(3) 유명무실한 제도

〈공부하는 학생선수〉

학생선수의 삶은 인생에서 그렇게 길지 않은데 0.1%의 선수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은 운동 중단하는 즉시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 후의 삶은 정말 피폐하거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공부하는 학생선수'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개별 면담, 이듬직 교수)

〈최저학력제〉

최저학력제가 학생선수도 기본적인 공부가 필요하다는 상징적 기여는 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한 측면이 있죠.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 최종 기준이 미달이 되더라도 보충학습을 통해 구제될 수 있거든요.

(개별 면담, 이수영 교사)

앞서 연구 1의 결과에서 보듯 엘리트스포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학습권 보장이다. 하지만,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바탕으로 최저학력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우회경로들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2017년 교육부의 대회출전 제한 완화조치는 공부하는 학생선수와는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수업을 빼줘도 문제없는 구조〉

이전에는 대부분 종목의 대회출전이 아무리 길어야 일주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전국대회 3회 출전이면 한 달이 안 되죠. 그런데 이걸 교육부가 2017년도인가에

대회출전이 수업일수의 3분의 1까지 가능하게 풀었어요. 개악이 된 거죠. ‘공부하는 학생선수’라는 큰 전제가 2000년대 초부터 시작해서 10년 넘게 체계화되다가 2017-2018년 2년 동안 현장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법정 수업일수가 190일인데. 그럼 63일을 대회에 나가거나 훈련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두 달이 넘는 시간을 수업을 빼져도 괜찮게 만든거죠... (중략)... 학생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폭넓은 의미에서 학생의 삶이라고 생각하면 학습권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이걸 국가에서 앞장서서 유보하고, 국가의 부름이라는 명목으로 훈련을 하는 거니 굉장히 문제 가 심각한 거죠.

(개별 면담, 이수영 교사)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은 수업 시간 보장과 연관이 있다. 다행히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 이후 ‘결석허용 일수’가 2021년 각각 10일, 15일, 30일로 축소됐다. 중요한 건 ‘빠질 수 있는’ 횟수 제한이 아닌 ‘꼭 참여해야 할’ 학업 일수 기준제정이다(홍지은, 최재섭, 임용석, 2021).

3) 인권친화적 엘리트스포츠를 위한 대안

인권친화적 엘리트스포츠를 위한 대안은 ‘체육특기자 제도 폐지’, ‘학습권 의미 재정의’, ‘신고시스템 및 징계기준 마련’, ‘학교운동부 지도자 역할 재정립’으로 나타났다.

(1) 체육특기자 제도 폐지

‘스포츠 강국 대한민국’을 대변하는 수식어처럼 따라붙는 것. 바로 국제대회 성적(메달 개수)이다. 하지만, 올림픽 종합순위가 곧 국력인 시대는 지났다(홍덕기, 2021). 전문가들은 국가의 스포츠 발전을 평가하는 척도가 바뀌어야 함을 지적했다.

〈패러다임의 전환: 메달이 아닌 참여〉

어린아이가 얼마나 컸나를 볼 때 키 눈금 재잖아요. 이게 어린아이들한테는 의미가 있지만 40살한테는 의미가 없잖아요? 키를 측정하는 게 모두의 성장 정도를 대변하지 못하잖아요. 계속 우리나라 발전 정도를 GDP로 평가하는 게 40살 어른들한테 자꾸 키 가지고 성장했다고 보는 관점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저

는 국가의 스포츠 발전을 평가하는 지표를 올림픽 메달 서열을 기준으로 삼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해요. 명확하게 이 기준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그 밑의 하부 시스템을 바꾸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개별 면담, 주현주 위원)

기존의 엘리트스포츠 평가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척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육특기자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

〈체육특기자 제도의 폐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이 문제가 거의 20년 전부터 논의가 되었던 문제들인데 지금까지도 계속 이런 분위기에 반복된다는 것은... (중략)...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대안이 체육특기자제도의 폐지라고 봐요. 근데 이 문제는 학부모, 학생, 지도자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얹혀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죠. 대학 입시에 교과성적과 비교교과성적 등을 평가하는 비중이 현장에서 의식할 정도가 되면 아마 큰 변화가 올 겁니다.

(개별 면담, 이수영 교사)

엘리트스포츠 시스템의 중심에는 ‘대학입시’가 자리하고 있다. 운동실적만으로 대학입학이 가능한 현 체육특기자 제도가 변하지 않는 한 엘리트 체육의 성과 주위 구조는 바뀌기 힘들다는 이유다. 조열정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굵은 곳이 많아 상처를 드러내고 외과적 절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체육특기자제도의 폐지는 학생선수의 상급학교 진학, 운동부 지도자의 직업 안정성 등 다양한 맥락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구성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단계적 축소가 필요하다.

〈체육특기자제도 폐지 시기〉

장기적으로 7~10년 후에는 없애는데 지금의 초등학교 4~5학년 아이들이 대학 갈 시기로 로드맵을 정하고 진행해야 피해가 없겠죠.

(3차 집단 면담, 이듬직 교수)

‘스포츠 강국 대한민국’을 대변하는 수식어처럼 따라붙는 것. 바로 국제대회 성적이다. 스포츠가 승자가 모든 것을 독점하는 제로섬(zero-sum) 게임이

아님에도 결과는 스포츠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로 작용했다. 앞서 기술했듯 ‘결과중심’, ‘승리중심’, ‘실적중심’ 속 엘리트 체육의 현실은 참담하다. ‘승리지 상주의’ 패러다임 속에서 실적 중심의 학생선수 육성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임용석, 류태호, 2014).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통제’나 ‘관리’보다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고, 건강하게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과 도움이다.

(2) 학습권의 의미 재정의

‘체육특기자 제도 폐지’와 함께 고려할 사안이 바로 ‘학습권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것이다. 학업은 단순히 성적을 잘 받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하지만, 경기실적만이 중요한 학생선수에게 학업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치부되기도 한다(임용석, 류태호, 2014).

〈학습권의 의미〉

학생선수에게 학업은 운동 이외에 다른 사회를 접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학업을 시험을 잘 봐야 하는 공부로만 생각하지 않고 학교라든지 수업에서 친구들과 만나고 어울리면서 사회생활을 알아가는 과정 자체로 봐야 한다는 거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운동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요.

(개별 면담, 김동계 선수)

〈자유권의 존중〉

최저학력제나 체육특기자제도의 폐지가 자칫 ‘너 이제 대학 가려면 공부해야 돼!’라는 시그널로 현장에 받아들여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는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해야지 왜 자꾸 공부하라고 해?’라고 반응하거든요. 선수나 부모들에게 학습권이 왜 중요한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운동을 계속할지 말지를 본인의 의지로 선택 할 수 있는 자유권도 학습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어야죠.

(1차 집단 면담, 주현주 위원)

학생선수의 학업은 ‘중의적 의미’가 있다. 이는 지식 외에 관계 형성 및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는 일인지도 하다. 따라서, ‘대학 가기 위한’ 수단이 아닌 삶

을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한의 경험으로 학습권의 의미가 재정의될 필요가 있다.

(3) 신고시스템 및 징계기준 마련

〈실질적 신고시스템의 마련〉

배구 쌍둥이 선수처럼 가해자가 유명하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다면 스티커나 홍보물을 기숙사나 훈련장 등 잘 보이는 곳곳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서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면 운동부는 학교 이외에 훈련, 시합 등 다양한 장소로 이동하기 때문이죠.

(1차 집단 면담, 임정의 교사)

〈징계기준의 명확성 및 세분화〉

일단 사건에 대한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 처벌의 기준이 명확하고 디테일하면 좋겠어요. 마녀사냥식으로 몰고 가는 거보다는 폭력의 사안이 일대 다수인지, 장기간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일대일이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 사안에 따라서 내부 기준도 마련하고 외국의 사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차 집단 면담, 임정의 교사)

〈신고의무제 도입〉

저는 운동부 폭력에서 은폐 시도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Safe Sport에서 모든 종류의 폭력과 성폭력에 관해 신고의무제도를 두고 있어요. 물론, 한국에도 아동학대 신고의무 제도가 있는데 아동이 18세 미만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피해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 없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일 처리되도록 신고의무제를 강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 집단 면담, 김동계 선수)

〈신속한 일별백계 시스템 구축〉

피해자의 관점에서 신고 이후 얼마나 신속하게 해결이 되는지에 대한 신뢰가 있지 않으면 (신고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일별백계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일별백계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신속하고 신뢰할 만한 체계를 가져야 일별백계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죠. 오히려 더 침묵할 수도 있죠.

(개별 면담, 주현주 위원)

누구나 평등하게 스포츠에 참여하고 차별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인권침해를 받았다면 누구든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선 명확한 징계기

준 마련과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할 방법들이 도입되어야 한다. ‘신고의무제’와 같은 법적 절차를 마련해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 상황과 보호가 개인이 아닌 모두의 의무이자 권리라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4) 운동부 지도자 역할 재정립

엘리트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가 대물림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지도자가 나서서 폭력의 악순환을 끊는 것이 중요하다(흥덕기, 2021).

〈폭력의 대물림 해체〉

매제 동생의 남편이 00대 농구부였거든요. 00 프로팀에서 뛰다가 은퇴했는데 중고등학교 때는 매일 맞고 매일 때렸다는 거예요. 얼굴에 침 벨는 건 일상이었고, 가해자이자 피해자였던 거죠. 자기가 대학을 어디 갈지 고민하다가 00대를 고르게 된 결정적 계기가 00대 감독이 폭력을 없앴다고 한 부분이었어요. 00 대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단 한 번도 때려본 적이 없대요. 맞은 적이 없으니까 안 때리게 되더래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차 집단 면담, 김대안 변호사)

그동안 운동부 지도자는 ‘운동 기능의 전수자’로서의 역할만이 강조됐다. 하지만 스포츠를 가르치는 행위는 엄연한 교육적 활동이다(최의창, 2009). 사장되어 있던 교육적 기능과 스포츠의 본질을 복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권 전도사로서의 지도자〉

인권위 실태조사를 보면 폭력 가해자로 운동부 지도자가 암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오거든요. 지도자는 매달 때마다 계약을 유지하죠? 그러니까 성적 내기 위해서는 폭력도 불사하는 거죠. 저는 지도자 인권 수당을 만들어서 수당 지급하고 지도자는 인권의 보호자, 수호자, 교육자라는 인식을 주는 현실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개별 면담, 이듬직 교수)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실천하기〉

‘말투 바꾸기’, ‘핸드폰 뺏지 말기’ 등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야 문화가 바뀐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00대 기숙사 들어가면 ‘다니까’ 말투 쓰고 핸드폰을 암

수해요. 선수들이 “왜 군대도 안 그려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러냐?”고 하소연을 합니다. 이런 건 지도자가 바로 바꿀 수 있거든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야 변한다고 봅니다. (2차 집단 면담, 조열정 교수)

대부분 운동선수는 운동부에 소속되는 순간부터 가족이나 친구보다 운동부 지도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다. 운동부 지도자의 지도성 회복과 역할 확장은 운동부의 반인권적, 교육적 대물림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엘리트스포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폭력, 성폭력, 학습권 침해 등 인권침해의 문제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를 위해 문헌 연구와 전문가 면담을 진행했다. 지난 20년간 엘리트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 상황은 계속됐다.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될 때마다 관계 부처(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교육부)는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인권상황 실태조사(2006, 2008, 2009, 2010, 2019)는 정책이 효과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연구 1은 139편의 엘리트스포츠 정책 관련 연구를 분석한 결과, 학습(70개), 폭력, 성폭력(27개), 제도 및 정책(23개), 인권(16개), 입시(3개) 관련 연구를 통해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었다. 엘리트스포츠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대안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84개, 42.4%), 구조개혁(42개, 21.2%), 인권보장(37개, 18.6%), 진학제도 변경(20개, 10.1%), 시합(훈련) 참여 제한(8개, 4.0%) 순으로 나타났다. 학습권 보장은 교육적 가치, 재사회화, 기본권, 기본 성과를 근거로 엘리트스포츠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담론으로 작용했다(명왕성,

2020).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선 시합 출전 및 훈련 시간제한, 리그제 도입 대학입학제도 변경 등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필요하다. 더불어 학습의 의미가 시합 출전을 위한 ‘수단’이 아닌 다양한 관계 형성,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생활기술 습득 등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임용석, 류태호, 2014).

연구 2에서는 엘리트스포츠의 인권침해가 부조리한 관행과 수직적 위계로 인해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엘리트스포츠의 이해관계자들은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여 인권침해를 은폐하여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쉽지 않음이 밝혀졌다. 한편, 근본적으로는 운동만을 강요받는 단선적 구조 속에서 학생선수는 각종 인권침해를 참아가면서도 운동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있다. 이런 구조와 맥락 속에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문제점은 ‘공론화의 미흡’, ‘인식의 결핍’, ‘유명무실한 제도’로 나타났다.

지속되는 스포츠 분야의 스포츠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선 첫째, 체육특기자제도 폐지를 통한 엘리트스포츠의 구조 변경이 요구된다. 학생을 선수의 잣대만으로 평가해 상급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제도는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이란 표어와 ‘최저학력 제 도입’ 취지와도 상반된다. 장기적 관점에서 선수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선수 육성 체계의 도입을 위해서 체육특기자제도의 폐지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메달 중심에서 인권 중심, 결과 중심에서 참여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 for all)’ 참여를 위해 스포츠클럽 제도의 도입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는 일부 인기 종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선수 수급의 문제를 공유하는 엘리트스포츠의 육성 체계의 변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안전한 스포츠 참여와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는 성별, 종목별, 연령대별 운동부 운영 규정 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홍지은, 최재섭, 임용석, 2021). 이상의 장기적 대안과 더불어 투명하고 독립적인 신고시

스템, 일벌백계를 위한 징계기준 마련,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단기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지속되는 스포츠 인권침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성’, ‘일관성’, ‘실천성’이 보장될 때 가능하다. 발생한 사건별 ‘처방’ 중심의 후속대책이 아닌, 발생 가능한 맥락과 드러나지 않은 영역을 고려한 ‘보호’와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운동부 지도자의 새로운 역할 제시는 운동부 문화를 긍정적으로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도자의 직업 안정성 역시 함께 보장될 필요가 있다.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하고, 제도 도입으로 인한 피해자가 없어야 할 것이다. 즉, 규제 중심의 제도 도입이 아닌 모두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설득 위주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모두가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목격자〉

폭력의 대물림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엘리트스포츠를 경험한 사람 99%가 피해자, 가해자, 혹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라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혹시 제3의 지대가 있다면 목격자 정도인 거죠. 즉, 이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 바뀐다는 겁니다. (1차 집단 면담, 조열정 교수)

2. 제언

김동현(2012)은 대한민국 학생선수의 삶을 경제적 압박, 취업난, 집값 상승 등의 이유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삼포(三拋)’ 세대에 비유했다. 학습권, 인권, 그리고 신체를 포기해야 대한민국에서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나이, 종목, 운동 수준, 성별, 장애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스포츠 참여자가 존재한다. 하지만, 엘리트스포츠 분야는 다양성에 대한 고려보다는 ‘전문 운동선수’ 육성만을 강조해왔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학생’선수, ‘여성’선수, ‘어린’선수의 인권은 사장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속되는 엘리트스포츠 분야의 학습권 침해, 폭력, 성폭력을 비롯한 인

권침해 상황을 진단하고자 했다. 또한, 그동안의 대책이 왜 실효성을 갖지 못했는지를 밝히고, 현장의 변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 작은 시도가 대한민국의 모든 선수가 안전하고, 건강하고,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폭력, 성폭력, 인권침해는 ‘고이 간직해 후속세대들에게 대물림해야 할 유산이 아니라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흥덕기, 2021).

〈그 사람들의 죄를 밝혀줘〉

‘하늘에서 故 최숙현 선수가 문체부가 발표한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근절대책을 봤다면 마음이 편했을까?’ 저는 우리 사회가 1년 전 故 최숙현 선수를 잃은 후 아직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또 다른 최숙현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대단한 걸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맞지 않고 운동하는 상식적인 세상을 바라는 것이거든요.

(1차 전문가 면담, 김직진 교수)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2008).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중·고교 학생선수의 학습권, 폭력, 성폭력 실태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2009). “**중도탈락**” 학생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2010).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대학교 학생선수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2019). **대학교 운동선수 인권실태 조사결과 발표(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19-12-16.
- 김동현(2012). 나에게 운동은 무엇이었나?: 운동선수로서의 삶과 그 의미에 관한 내리티브 탐구. **체육과학연구**, 23(2), 343-359.
- 류태호(2005). 학원스포츠의 과제와 전망.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2(2), 91-108.
- 명왕성(2020). 학생선수 학습권 관련 지식 담론에 관한 내용분석. **한국체육학회지**, 59(5), 221-239.
- 안민석(2002). 학교체육과 지역사회체육의 연계 방안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1(1), 73-86.
- 안민석, 흥덕기(2019). **스포츠인권 백서: 언론보도를 통**

해 본 반(反)인권 사례모음. 국회의원 안민석 정책자료집.

오교문, 임용석(2018). 한국과 양궁 학생선수 육성과정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2(4), 99-112.

유재구(2021). 체육계 학교폭력과 대응에 대한 고찰 및 제언.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4(2), 49-73.

이상연, 안민석(2004). 학생선수들의 수업결손에 대한 정책대안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3(3), 127-135.

임용석, 류태호(2014). 대학교 학생선수의 수업일상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1(3), 113-140.

임용석, 류태호, 이규일(2010). 중도탈락 학생운동선수들의 상실 과정. **교육인류학연구**, 13(3), 37-69.

임용석, 최원석(2020).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학교운동부 사례연구 : A고등학교 스쿼시부를 중심으로.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5(3), 55-69.

임태성, 박재우(2011). 스포츠정책 결정과정에서 미디어의 역할: 2003년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50(1), 11-23.

조옥상, 이용국(2013).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의 현실적 문제점. **한국체육과학회지**, 22(6), 1013-1029.

최의창(2009). 스포츠 폐마다그 : 전인적 체육지도자와 그가 하는 일. **스포츠인류학연구**, 4(2), 1-28.

한승백, 탁민혁(2017). 1972년 이전 체육특기자제도의 궤적: 입시제도 안에 구축된 스카우트 관행.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30(3), 19-45.

흥덕기(2020).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문 분석을 통한 한 국사회 스포츠폐러다임의 방향 설정과 과제. **한국체육학회지**, 59(2), 285-302.

흥덕기(2021). 스포츠 인권 정책분석을 통한 인권침해 원인과 향후 과제.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4(1), 23-52.

홍지은, 최재섭, 임용석(2021). 학생선수 친화적 종목별 학교운동부 운영규정 제정을 위한 탐색: 미국 학교운동부 농구리그 운영규정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6(1), 145-163.

동아일보(2021. 03. 19). 이숙진 스포츠윤리센터장 자진 사퇴...조사 전문 인력 부족. 2021-5-12.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319/105967781/1>

오마이뉴스(2020. 09. 21). **농구선수로 11년 살아온 제가
‘최숙현의 절규’에 답합니다.**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74750

중앙일보(2000. 05. 24.) **(여자수영)장희진 시드니행 출전
권 박탈.** <https://news.joins.com/article/3921295>

한겨레(2003. 10. 15). **자전거 허리. 팔 류인채 달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0027379>

SBS(2019. 01. 10). **“제자에게 이럴 수 있나”... 심석희
‘조재범 성폭행 폭로’ 단독보도 그 이후.**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92172

ABSTRACT

Purpose: Human rights violations in elite sport system have been occurred consistently including physical verbal and, sexual violence as well as violation of rights to be educa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problems of human rights in sport issues and provide effective solutions.

Methods: This study was divided by two parts. The study one examined literature review regarding human rights in sports issues. The total 139 literature was analyzed based on the problems and solutions for the major human rights violation incidents and policies. The study two analyzed individual interviews as well as three focus group interviews. The total 10 experts were participated including professors, retired national team coaches and athletes, social activists, lawyers, feminist, and physical education teacher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content and domain analysis. For the trustworthiness of the data, triangulation, peer debriefing, and expert meeting were conducted.

Results: The study one showed that the several human rights in sport policies were created after the major human rights violation incidents. The solutions were educational rights protection(42.4%), elite sports system change(21.2%), human rights protection(18.6%), university entrance system change(10.1%) and sports game participation restriction(4.0%). The study two showed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were justified by the rationale of custom and hierarchy, silent cartel, and one-way structure. The problems of the elite sport system were lack of public recognition, lack of awareness, and ineffective policies. The solutions were elite sports system change, re-conceptualization of the rights to be educated, immediate report system for human rights violation and coaches as human rights advocates.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that the human rights in sport policies need to be reconsidered.

Key words: elite sport system, human rights violations, sport policy, sport instructor

논문 투고 일 : 2021.07.15

논문 심사 일 : 2021.07.31

심사 완료 일 : 2021.08.15